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872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7.

발 의 자 : 박정현・양부남・이해식
황명선・서미화・이재정
문진석・이광희・박홍배
김동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을 때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.

이로 인해 도매법인 한 곳이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 동안 독・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
이는 법인 간 경쟁 저하를 촉발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법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고, 당초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.

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재지정 시 공모를 통한 선정과 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,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고용하게 하는 한편, 동일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를 정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23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 제목 "(도매시장법인의 지정)"을 "(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"지정하되"를 "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법인으로 지정하되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제1호"를 "제4항제1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3항제2호"를 "제4항제2호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도매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서 법인 선정과 같은 방식으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

⑦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할 때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, 농업인 권익보호,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3(도매시장법인의 상한)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의 수의 상한은 해당 도매시장의 거래 물량 및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.

③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의2제1항 중 “재무상황”을 “재무상황, 등기임원의 보수”로 한다.

제42조제2항 중 “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”을 “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.

1. 양곡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
2. 청과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(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미만)
3. 수산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

4. 축산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(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·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)

5. 화훼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

6. 약용작물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　　행	개　정　안
제23조(도매시장법인의 지정)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,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.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	제23조(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법인으로 지정하되--. --.
<신　설>	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도매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서 법인 선정과 같은 방식으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
②·③ (생　략)	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 제4항제1호--.

⑤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.	⑥ --------------------- 제4항제2호---.
<신 설>	⑦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할 때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, 농업인 권익보호,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⑥ (생 략)	⑧ (현행 제6항과 같음)
<신 설>	제23조의3(도매시장법인의 상한)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의 수의 상한은 해당 도매시장의 거래 물량 및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.
제32조(매매방법) (생 략)	제32조(매매방법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③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

	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제35조의2(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)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,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(公示)하여야 한다.	제35조의2(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) ① --- 재무상황, 등기임원의 보수 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2조(수수료 등의 징수제한) ① (생 략)	제42조(수수료 등의 징수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	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---.
<신 설>	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. 1. 양곡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. 청과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(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미만)

	3. 수산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. 축산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(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·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) 5. 화훼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. 약용작물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